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99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12월 1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공포일 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바, 본 개정조례안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함(안 부칙).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”을 “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칙 (생 략)	부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 59호서식, 「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·제7호서식

수수료 징수대상사무	단위	금 액
1) 택시미터 정기검정 수수료	1대	2,400원
2)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: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.		
- 기본검정료(접수, 차량유도, 신청서 확인 및 안내, 봉인 등)	1대	2,800원
- 거리검정료(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) ※ 단,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.	1대	6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
<p>【별표】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(제3조 관련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분야별 수수료 가. ~ 아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신 설 ></u></p>	<p>【별표】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(제3조 관련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분야별 수수료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자. <u>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9호서식, 「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·제7호서식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수료 징수대상사무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택시미터 정기검정 수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400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2)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: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기본검정료(접수, 차량유도, 신청서 확인 및 안내, 봉인 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8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거리검정료(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) ※ 단,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.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수수료 징수대상사무	단위	금 액	1) 택시미터 정기검정 수수료	1대	2,400원	2)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: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.			- 기본검정료(접수, 차량유도, 신청서 확인 및 안내, 봉인 등)	1대	2,800원	- 거리검정료(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) ※ 단,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.	1대	600원
수수료 징수대상사무	단위	금 액														
1) 택시미터 정기검정 수수료	1대	2,400원														
2)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: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.																
- 기본검정료(접수, 차량유도, 신청서 확인 및 안내, 봉인 등)	1대	2,800원														
- 거리검정료(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) ※ 단,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.	1대	600원														